

울산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9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구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종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17. 2. 28. 체결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16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는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또는 그 대표이사인 C에게 주택건설시행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

일자	금액	변제기	비고
2016. 5. 24.	7억 원	3억 5,000만 원 2016. 8. 31.까지 3억 5,000만 원 2016. 10. 31.까지	채무자 C
2016. 7. 15.	5억 원	차용 후 3개월	채무자 D 보증인 C
2016. 8. 11.	3억 원		
2016. 9. 13.	4,000만 원		
2016. 10. 26.	2억 3,000만 원		
2016. 11. 29.	3,600만 원		

나. 피고와 C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등

C는 이 사건 부동산1)에 관하여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E조합을 1순위 수익자로, C를 수탁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처분하였던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6. 9. 13.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17. 2. 28.경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12.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는 신탁법 제8조 제1항의 사해신탁취소의 소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4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7. 2. 28.경 구체적인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사실과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를 변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그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가 사해행위 또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신탁의 경위목적경제적 의미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즉, ① C와 D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C와 D의 당시 자금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신규자금을 융통하여야만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C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E조합으로부터 2017. 2. 22. 6억 1,000만 원, 같은 해 3. 10. 18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다만, 채무자는 G이었다), 위 각 대출금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거나 그밖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나, 신탁재산은 소비하기 쉽도록 현금화되지 아니하고, 신탁원부에 신탁에 관한 모든 사항이 공시되므로 원고로서도 신탁재산의 운용상태를 확인 및 감시할 수 있으며,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로서 피고에게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C와 D의 자금 상황,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받은 자금의 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C와 D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변제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5.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가부

가. 관련법리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신탁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866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우선수익자인 E조합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는 G을 채무자로 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E조합이 일반적인 대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C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주택신축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C가 아닌 G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E조합으로서도 C로부터 C나 D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인 2016. 9.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조합이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E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C나 D와 별다른 연고가 없고, E조합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지혜, 판사 한윤영, 판사 신동욱

[별지]

부동산 목록

1. 양산시 F 전 1314.5㎡
2. 양산시 I 전 317㎡
3. 양산시 J 전 455㎡
4. 양산시 K 전 182㎡
5. 양산시 L 전 212.9㎡ 끝.

1)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신탁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것은 '양산시 F 전 990㎡외 1필지'였으나, 위 F 토지의 분할, 합병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최종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다. 이하 분할,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